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321
------	-----

2022. 11. 01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】
  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11.0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정수용 기획조정실장)

#### 1. 제안이유

- ‘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(직속기관)에 따른 정원 조정,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,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에 따라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,139명에서 19,167명으로 28명 증원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직급 조정
  - (직속기관) 소방령 이하 △1 → 소방정 +1(안전체험관장)
  - ▶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별표1에서 소방체험관장(시민안전체험관장)의 직급을 ‘소방정’ 으로 규정
- 나.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및 임기제 계약 만료 등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
  - (사업소) 5급 이하 △9 → 전문경력관 +9
- 다.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
  - (의회사무처) 5급 이하 +28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‘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에 따라 운영인력의 직급을 조정하고, 서울대공원 소속 사육운영직의 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정원을 인력증원 없이 상계조정 하며, 의회 의정활동과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28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됨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19,139명에서 19,167명으로 28명 증원됨.

**< 정원 조정 내용 >**

구분	총 정원	정무										별정	연구	지도	소방	경찰	교육
			일반	1급	2·3급	3급	3·4급	4급	4·5급	5급이하	전문 경력관						
현행	19,139	4	10,689	7	26	17	5	255	10	10,241	128	37	407	24	7,434	3	541
개편후	19,167 (+28)	4	10,717 (+28)	7	26	17	5	255	10	10,260 (+19)	137 (+9)	37	407	24	7,434	3	541

**나. 분야별 인력증감에 대한 검토**

**(1) ‘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직급 조정(소방령 이하 △1 → 소방정 +1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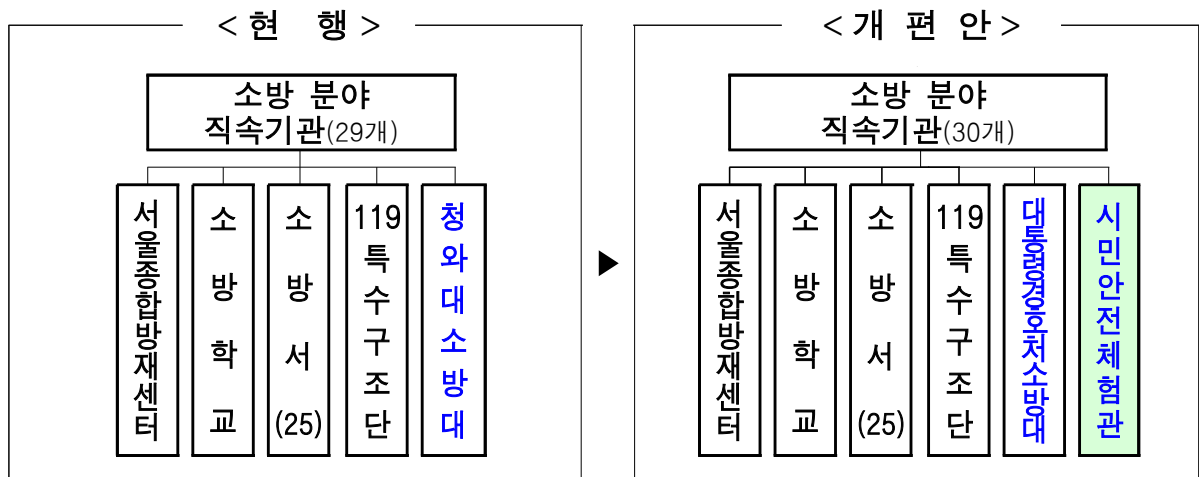
- 최근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면서(2022.4.15. 시행) 소방체험관을 시·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됨.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<sup>1)</sup>에 따라 조례로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는 현재 ‘서울시립대학교’, ‘소방서(25개 자치구)’ 등을 포함한 33개소를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 하부조직으로

1) 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운영중이던 광나루(2003.3.6. 개관)와 보라매(2010.5.25. 개관)체험센터의 통합적 관리·운영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체험관을 신설할 예정(2023.1.)임.

- 센터는 화재나 지진,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임.

### < 소방분야 직속기관 조직 개편(안) >



- 신설되는 소방체험관장의 직급은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에서 ‘소방정(4급 상당)’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계조정을 통해 소방사(9급 상당) 1명을 줄이고 소방정 1명을 증원하게 됨(전체 정원 변동 없음).
- 최근 경주·포항지진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, 이천 물류센터 화재, 이태원 압사 참사 등 대형 재해·재난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- 개정안은 안전체험관을 서울시 직속기구로 편제·신설하여 시민의

위기 대처 능력 함양 및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소방안전교육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(2)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(사업소 5급 이하 △9 → 전문경력관 +9)

- 개정안은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의 정원을 상계 조정해 동물사육<sup>2)</sup> 분야의 전문경력관<sup>3)</sup> 나급 1명, 다급 8명 등 총 9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음.
- ‘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’에 따라 관리운영직 1명, 임기제 8명의 결원 정원을 전문경력관 직종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음.

<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내역>

분야	대상	조정내역
동물사육	관리운영직(사육운영) 6급 1명	전문경력관 나급 1명
	임기제(농업) 8급 1명	전문경력관 다급 8명
	임기제(농업) 9급 7명	

※ 전문경력관 가군(5급 상당), 나군(6~7급 상당), 다군(8~9급 상당)

- 동물사육 분야는 동물전시·사육관리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유 동물의 먹이·습성·생태 등의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

2) 동물사육 업무는 ① 관리운영직(사육운영), ② 임기제농업직(동식물관리요원), ③ 전문경력관(동물사육) ④ 일반농업직 4개 직군에서 수행 중임.

3) 전문경력관 :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써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 구분, 직군과 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를 말함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).

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은 타당함.

- 서울시는 그동안 동물사육과 동물박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면서 매년 1~2회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있음.

### <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 현황>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. 4월	2022. 7월
조정인원	11	18(+7)	23(+5)	30(+7)	34(+4)	40(+6)
조정내역	-	사육운영8급 △7명 → 나군 +1, 다군 +6	사육운영7급 △2명, 8급 △3명 → 다군 +5	사육운영7급 △3명, 임기제 △4명 → 나군 +4, 다군 +3	사육운영7급 △1명, 임기제 △3명 → 나군 +2, 다군 +2	사육운영6급 △1명, 사육운영7급 △1명, 임기제 △4명 → 나군 +4, 다군+2

※ 2018년 전문경력관 조정인원 11명은 전문경력관 나군 5명, 다군 6명 신규채용(2016.10월)에 따른 인원임.

- 이는 동물사육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성과 숙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, 연도별 예정 퇴직 인력을 감안하여 정원조정 시 일괄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### <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 향후 계획>

구분	2022. 11월	2023	2024	2025	2027
조정인원	49(+9)	50(+1)	58(+8)	66(+8)	67(+1)
조정내역	사육운영6급 △1명, 임기제 △8명 → 나군 +1, 다군+8	사육운영6급 △1명 → 나군 +1	사육운영7급 △1명, 임기제급 △7명 → 나군 +1, 다군 +7	사육운영6급 △3명, 임기제 △5명 → 나군 +3, 다군 +5	사육운영7급 △1명 → 나군 +1

### (3) 의회사무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(5급 이하 +28)

-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「지방자치법」이 32년만에 전부개정 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(2022.1.13. 시행).
- 지방의원 정수의 1/2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.

#### 「지방자치법」

**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**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  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**제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)**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.
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 정수 1/2 범위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56명 중 2022년도 분(의원정수의 1/4) 28명을 채용하였으며(2022.8.), 나머지 2023년도 분 28명을 개정안에 신규로 반영하게 됨.

### < 시의회사무처 정원조정 내역(안) >

(2022. 9월 현재)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		임 기 제							관 리 운 영			전 문 직 정책·관	별 정 직	
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1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6급			7급 이하
조정전	401	209	6	30	67	78	26	2	158	1	13	21	74	41	7	1	21	2	19	4	9
조정후	429	209	6	30	95	78	26	2	158	1	13	21	74	41	7	1	21	2	19	4	9
증 감	(+28)				(+28)																

-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변화된 의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.
- 다만,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서는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음(2023년 1월 1일 시행 → 공포시 시행).
- 또한, 개정안 [별표 4] 의 표 중 일반직 계란에 정원의 합계 상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(일반직 계 10,689명 → 10,717명).

### <수정의견 조문대비표>

개정안	□ [별표 4]						
	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	총 계	11,730					
	정무직 계	4					
	시 장	1	1				
	부시장	1	1				
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	1					1	


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상임위원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10,689</b>					
1급	7	6	1			
2·3급	26	21		1	3	1
3급	17	8		1	8	
3·4급	5	5				
4급	255	152	19	8	68	8
4·5급	10	10				
5급 이하 소계	10,260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7					

수정의견

[별표 4]
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<b>총 계</b>	<b>11,730</b>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4</b>					
시 장	1	1				
부시장	1	1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
<b>일반직 계</b>	<b>10,717</b>					
1급	7	6	1			
2·3급	26	21		1	3	1
3급	17	8		1	8	
3·4급	5	5				
4급	255	152	19	8	68	8
4·5급	10	10				
5급 이하 소계	10,260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7					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수정안요지

##### 가. 수정이유

-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

터로 수정하고, [별표 4] 의 표 중 일반직 계란에 정원의 합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변경함.

#### 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함(부칙).
- 일반직 계란 10,689명을 10,717명으로 수정함(안 [별표 4]).

#### Ⅵ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#### 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1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1월 1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, [별표 4]의 표 중 일반직 계란에 정원의 합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변경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함(부칙).
- 일반직 계란 10,689명을 10,717명으로 수정함(안 [별표 4]).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[별표 4] 의 표 중 일반직 계 “10,689명”을 “10,717명”으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4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<b>1170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 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계</b></td> <td><b>1069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6</td> <td>2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8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5급 이하 소계</b></td> <td><b>1024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전문경력관 소계</b></td> <td><b>128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p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<b>총계</b>	<b>1170</b>						정무직 계	4						시 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<b>일반직 계</b>	<b>1069</b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6	21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	19	8	68	8	4·5급	10	10					<b>5급 이하 소계</b>	<b>1024</b>						<b>전문경력관 소계</b>	<b>128</b>						<p>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<b>1170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 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계</b></td> <td><b>1069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6</td> <td>2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8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5급 이하 소계</b></td> <td><b>1023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전문경력관 소계</b></td> <td><b>13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<b>총계</b>	<b>1170</b>						정무직 계	4						시 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상임위원	1					1	<b>일반직 계</b>	<b>1069</b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6	21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	19	8	68	8	4·5급	10	10					<b>5급 이하 소계</b>	<b>1023</b>						<b>전문경력관 소계</b>	<b>137</b>						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계</b></td> <td><b>1170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 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계</b></td> <td><b>107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6</td> <td>2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8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5급 이하 소계</b></td> <td><b>1020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전문경력관 소계</b></td> <td><b>13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<b>총계</b>	<b>1170</b>						정무직 계	4						시 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상임위원	1					1	<b>일반직 계</b>	<b>1077</b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6	21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	19	8	68	8	4·5급	10	10					<b>5급 이하 소계</b>	<b>1020</b>						<b>전문경력관 소계</b>	<b>137</b>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<b>117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1069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6	21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	19	8	6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5급 이하 소계</b>	<b>1024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전문경력관 소계</b>	<b>128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<b>117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1069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6	21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	19	8	6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5급 이하 소계</b>	<b>1023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전문경력관 소계</b>	<b>137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계</b>	<b>117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1077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6	21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	19	8	6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5급 이하 소계</b>	<b>102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전문경력관 소계</b>	<b>137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9,139명” 을 “19,167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401명” 을 “429명” 으로 한다.

별표 4의 표 중 총계란, 일반직 계란, 5급 이하 소계란,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 계	11,730	
-----	--------	--

일반직 계	10,717	
-------	--------	--

5급 이하 소계	10,260	
----------	--------	--

전문경력관 소계	137	
----------	-----	--

별표 5의 표 중 소방공무원 소방정란 및 소방령 이하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

한다.

소방정	31	2		29		
-----	----	---	--	----	--	--

소방령 이하 계	7,397					
----------	-------	--	--	--	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					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19,13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							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19,167명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3. (생략)						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401명								4. -----: 429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~ 6. (생략)								5. ~ 6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4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								[별표 4] -----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분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11,70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10,68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6</td> <td>2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2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8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4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28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		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총계	11,702						정무직계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	1					1	일반직계	10,689						1급	7	6	1				2·3급	26	21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2	19	8	68	8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241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28									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분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11,73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10,71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6</td> <td>2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5</td> <td>152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8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6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3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				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총계	11,730						정무직계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	1					1	일반직계	10,717						1급	7	6	1				2·3급	26	21		1	3	1	3급	17	8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5	152	19	8	68	8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260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37					
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11,7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10,68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6	21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2	19	8	6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11,7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10,7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6	21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5	152	19	8	6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5]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2항 관련)								[별표 5] -----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분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방공무원계</td> <td>7,43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준감</td> <td>5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</td> <td>30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28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령 이하계</td> <td>7,398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p>		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소방공무원계	7,434						소방준감	5	4		1			소방정	30	2		28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령 이하계	7,398									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분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방공무원계</td> <td>7,43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준감</td> <td>5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</td> <td>31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2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령 이하계</td> <td>7,39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			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소방공무원계	7,434						소방준감	5	4		1			소방정	31	2		29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령 이하계	7,3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공무원계	7,43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준감	5	4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	30	2		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령 이하계	7,39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분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공무원계	7,43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준감	5	4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	31	2		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령 이하계	7,3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